



##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

제출자 : 평창군수

#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17
----------	----

제안연월일 : 2022. 9. .  
제안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어린이 급식소의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에 의거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련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의 동의)

### 나. 위탁운영 개요

- 시설명 :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위탁기관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방법 : 재협약,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

다. 위탁시설

세부시설명	위 치	자원예산 (천원)	운 영 인 력		비고
평창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평창읍 중부로 61 (평창군사회복지센터2층)	118,600	3명	센터장(1) : 비상근 팀장(1) : 상근 팀원(1) : 상근	

○ 주요사업내용

- 등록시설(급식소) 관리 : 22개소 622명 (2022. 8. 31.기준)
-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라. 향후 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협약 검토 및 결정 : 2022. 9월
-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 2022. 10월
- 위탁운영 재협약 체결 : 2022. 11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 2023. 1. 1. ~ 2025. 12. 31.

마. 기대효과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 관계법령 발취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체육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4.12.>

② 군수는 재 위탁 또는 재 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